

## 『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』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

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라 『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』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 수행기관(학습지 전문업체)를 공개 모집합니다.

2023. 3. 3.

### 군포시가족센터장

#### 1. 사업개요

○ 사업목적

-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1:1 수준별 방문 학습 교육
- 한국어 학습능력 향상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

○ 계약기간 : 2023. 4. 1. ~ 2023. 11. 30.(개인당 8개월 이내)

○ 사업대상 : 만4~11세 다문화가족 자녀 및 초등학교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  
※ 저소득, 한부모, 다자녀, 장애인 등 우선 선발 지원

○ 사업내용

- 한글, 국어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
- 방문교사 주 1회 방문, 15분 내외 수업 진행

○ 사업량 : 약00명(수업료 단가에 따라 사업량 변경 가능)

○ 사업비 : 5,040천원(군포시 00%, 사업자 00%)

- 사업비(도·시·군 부담분) 지급방식 : 후지급

#### 2. 신청자격

-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글·국어 학습 지도능력을 갖추고, 현재 방문학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문 수행기관
- 저소득, 한부모, 다자녀, 장애인 등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습비용은 1인 40,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

- 사업비 부담내용

구분	부담 구분	부담비율	비고
주관	경기도, 시·군	00%	
수행	방문학습 수행기관	00%	
-	학습자	3,000원	

### 3. 공고 및 신청서 접수

- 공고기간 : 2023. 03. 03.(금) ~ 2022. 03. 17.(금) / 14일간
- 접수기간 : 2022. 03. 03.(금) ~ 2022. 03. 17.(금) / 14일간
- 선정심사 : 2023. 03. 23.(목) 예정
- 공고방법 : 센터 홈페이지 공고
  - ※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재공고(5일 이상)하고, 추가 신청기관이 없을 시 단독 심의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10:00~18:00)
  - ※ 접수처 : 군포시 수리산로 112, 수리산 상상마을 슬기관 1층,  
군포가족센터
- 제출서류
  - 사업신청서 (서식1)
  - 사업제안서(공문 포함) (서식2)
  - 사업 수행지점 및 인력 현황 (서식3)
  - 기관·업체 소개서 (서식4)
  -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사항증명서, 법인(단체, 회사)설립허가증 중 해당 되는 자료
  - 사업제안 PPT (USB 저장매체로 제출) 및 출력물
    - 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.
    - ※ 신청서류 번호 순서대로 제본(A4종 좌철) 3부 제출(원본 1부, 사본 2부), 사업제안 PPT는 USB 저장매체로 제출

### 4.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

- 심사기준 : 방문학습 운영, 프로그램의 다양성, 사업수행능력
- 선정방법
  -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
  - 신청기관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“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사업 운영

계획” 등을 발표(10분 내외)하여야 하며, 불참할 때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

○ 심사방법

-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선정

※ 심사위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득점 기관으로 선정

- 동점일 경우 심사항목 중

① 방문학습 운영 ② 프로그램 우수성 ③ 사업수행능력 순으로 결정

- 신청기관이 1곳일 경우, 평균 70점 이상일 때 선정

-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: 일정 및 장소 별도 통보

## 5. 선정결과 발표

○ 결과발표일 : 2023. 03. 24.(금) 예정

○ 발표방법

-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업체 개별 통지

- 미 선정업체 별도 연락 없음

## 6. 기타사항

○ 신청접수 현황, 심사내용 및 배점 결과는 비공개

○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접수 후 열·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

○ 공고내용 미숙지·미확인,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

○ 접수된 서류 중 관계 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단된 경우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해당 항목 0점 처리

○ 지정된 기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선정 결정통지를 무효로 하며, 차순위 기관과 별도 협약할 수 있음.

○ 사업제안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,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업체는 「경기도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함